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05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최민희 · 노종면 · 박민규
허성무 · 이정현 · 장종태
이재관 · 김 현 · 황정아
추미애 · 김남근 · 이원택
권향엽 · 박지원 · 양부남
문대림 · 오세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처럼 선거일이 화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되어 사전투표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관할구역의 인구가 많은 개표소에서는 원활한 개표참관을 위하여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하고 원활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궐위선거 등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읍·면·동의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148조제1항 제5호 신설).

다.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1조제2항 단서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읍·면·동의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

제1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시 · 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 · 면 ·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② ~ ⑥ (생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생략)

② 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읍·면·동의 인구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u><단서 신설></u> ③ ~ ⑫ (생략)	<u>다만,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u> ③ ~ ⑫ (현행과 같음)
---	--